

Vol. **128**

2023년 11월
해사안전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사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총괄 박한선 실장
- 감수 이연경 연구위원
- 발행인 김종덕 원장
- 발행처 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
해사산업연구실
-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
301번길 26(동삼동)
- TEL. 051-797-4800
- FAX. 051-797-4810



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적행위를 억제하고 해사안전 증진에 기여해야

IMO, ‘지부티 행동강령’과 ‘제다 개정안’을 통해 해적퇴치, 불법해사행위 근절 노력

- ▶ IMO는 ‘지부티 행동강령’에 대한 ‘제다 개정안’ 이행을 위한 제6차 고위급 회의 개최 a).b).c)
 - 국제해사기구(IMO)는 2023년 10월 24~26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‘지부티 행동강령*(DCoC: Djibouti Code of Conduct)’ 서명국, ‘지부티 행동강령에 대한 제다 개정안**(DCoC/JA: Jeddah Amendment to the Djibouti Code of Conduct)’ 서명국 및 서명 자격이 있는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제6차 고위급 회의 개최
 - * ‘지부티 행동강령’은 2009년 1월 아프리카의 지부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 발생하는 선박에 대한 해적·무장 강도 퇴치를 위해 채택한 규범
 - ** 201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인신매매와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: illegal, unreported and unregulated) 어업 등 불법해사행위로 적용범위를 확장한 ‘지부티 행동강령’에 대한 ‘제다 개정안’이 채택됨

〈그림 1〉 지부티 행동강령에 서명 자격이 있는 국가



자료 : IMO

- 코모로, 에티오피아, 요르단, 케냐, 몰디브, 모리셔스, 마다가스카르, 모잠비크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소말리아, 남아프리카, 탄자니아, 예멘 등의 국가 대표 참석

- 회의의 주요 목표는 ‘제다 개정안(DCoC/JA)’에 대한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, 합의된 행동 사항을 사후 점검하고, 새로운 도전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논의하는 것임
 - 제다 개정안과 다른 지역적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창출 방안, 정보공유 네트워크(ISN: Information Sharing Network) 강화방안, 불법해사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활용 방안,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는 국제적 노력 등을 다룸
 - 채택된 결의안으로는 ①DCoC/JA 정보공유 네트워크 운영, ②DCoC/JA 서명국의 해사안보전략 개발, ③역량강화 조정을 위한 주제별 전문 작업그룹 설립
- ▶ **지부티 행동강령을 통해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와 무장강도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적 체제 마련** ^{b),c),d)}
- 지부티 행동강령(DCoC)은 2009년 1월 29일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개최된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와 무장강도 억제를 위한 회의에서 채택되어 지부티, 에티오피아, 케냐, 마다가스카르, 몰디브, 세이셸, 소말리아, 탄자니아, 예멘이 서명
 - 이후 코모로, 이집트, 에리트레아, 요르단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오만, 사우디아라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가 참여
 - 서명국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:
 - ①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수사·체포·기소 (그러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고의로 조장한 자를 포함)
 - ② 의심스러운 선박 및 재산에 대한 저지·압류
 - ③ 해적 및 무장강도의 대상이 된 선박, 사람, 재산의 구조와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선원, 어민, 그 밖의 선박직원과 승객, 특히 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돌봄, 치료, 송환의 촉진
 - ④ 다른 서명국의 초계함이나 항공기에 승선하도록 법집행기관이나 다른 권한 있는 공무원을 지명하는 등 서명국과 지역 외 국가의 해군과의 공동 작전 수행
 - 또한 지부티 행동강령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 부문에서 소통, 조정, 협력을 위한 틀을 제공:
 - (a) 지부티 지역훈련센터(DRTC: Djibouti Regional Training Centre)와 다른 국제·지역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훈련 제공
 - (b) 서명국들이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권 행사, 수사·기소를 할 수 있는 법제 마련
 - (c) 케냐 몸바사(Mombasa, Kenya),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(Dar es Salaam, United Republic of Tanzania), 예멘 사나(Sana'a, Yemen) 등에 위치한 정보공유센터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해양상황인식 (Maritime Domain Awareness)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상자동식별시스템(AIS: Automatic Identification

System), 선박장거리 식별추적(LRIT: Long-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) 시스템 등 도입
(d) 유엔 기구 및 E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해적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과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퇴치를 위한 역량 형성

- IMO는 회원국들이 지부티행령강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‘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(ITCP: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)’과 ‘지부티 행동강령 신탁기금(Djibouti Code Trust Fund)’의 자금지원을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

▶ 제다 개정안을 통해 해사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가·지역 간 협력 강화 ^{b),c),d)}

- 남부·동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연안 국가들은 지부티 행동강령을 통해 강화된 국가·지역 간 협력, 정보공유, 역량 강화 및 훈련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, 해상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에 맞서서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해짐
- 2017년 채택된 제다 개정안(DCoC/JA)은 인신매매와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으며, 무기·마약 밀매, 불법 야생동물 거래, 불법 석유 벙커링 및 절도, 유독성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포괄
- 해적 퇴치 활동에서 불법어업이나 유독성 폐기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2012년부터 이 지역에서 해적 사건이 감소하고, 다른 주요 해사안전 위협들이 존재하며, 지속가능한 경제성장, 식량안보, 고용, 번영, 안정을 위한 해운, 항해, 어업, 관광을 포함한 ‘청색경제(blue economy)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
- 개정안에는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호,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, 항만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, 해사안전정책 개발 등 포함
- 제다 개정안은 구속력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국의 협력적 노력 요구됨

■ 아프리카 해적 활동의 중심지 이동과 국제 사회의 대응

▶ 아프리카의 해적 활동의 중심지는 동아프리카의 아덴만 지역에서 서아프리카의 기니만 지역으로 이동 ^{e),f),g),h),i),j)}

- 소말리아와 예멘 사이에 위치한 아덴만은 인도양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세계 물류의 요충지로서 2000년대 초부터 소말리아 해적활동 증가
-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외국 어선에 의한 불법 어업이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 1991년 중앙정부가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가 되자 소말리아인들의 외국 어선에 대한 공격행위가 해적행위로 변질됨
- 2009년 4월 미국의 머스크-엘라배마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으며, 2011년 우리나라의 화물선 삼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어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구출작전 수행
- 군사협력 등 국제공조를 통해 아덴만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는 감소 추세

- 2010년대 이후 서아프리카 기니만(Gulf of Guinea) 지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정세불안 등의 원인으로 해적행위 증가
- 2013년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(ECCAS),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(ECOWAS), 기니만위원회(GGC)는 IMO의 도움을 받아 '서부·중앙아프리카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행위, 해사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행동강령'을 제정하여 기니만 지역의 해사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적 체계 마련

지역적·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사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국제 해사안전 증진에 힘써야

- ▶ 정보공유체계 등을 활용한 지역적·국제적 협력을 통해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를 억제하고 해사안전 증진에 힘써야⁹⁾
 - 아시아 지역에서는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간 노력으로 2004년 16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여 아시아해적퇴치협정(ReCAAP: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)이 체결됨
 - 해적과 무장강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ReCAAP 정보공유센터(ISC: Information Sharing Centre)를 활용하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은 지역협력체계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됨
 - 선주, 운항사,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의 위험성과 예방·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 정부는 정보공유체계 구축, 군사협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해사불법행위 억제 노력에 기여해야 함

정재호 전문연구원

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
(chungjh@kmi.re.kr / 051-797-4391)

참고 자료

- <https://dotevents.transport.gov.za/DCCHLM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imo.org/en/OurWork/Security/Pages/Content-and-Evolution-of-the-Djibouti-Code-of-Conduct.aspx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imo.org/en/OurWork/Security/Pages/DCCoC.aspx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issafrica.org/iss-today/from-djibouti-to-jeddah-the-western-indian-ocean-needs-security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ft.com/content/3c67767c-301c-41b9-bbdc-189546dc04ef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frontiersin.org/articles/10.3389/fmars.2019.00704/full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imo.org/en/OurWork/Security/Pages/PiracyArmedRobberydefault.aspx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dg.dryadglobal.com/why-is-gulf-of-guinea-piracy-on-the-rise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03-piracy-Gulf-of-Guinea.aspx/> (검색일 : 2023.11.21.)
- <https://www.imo.org/en/OurWork/Security/Pages/Code-of-Conduct-against-illicit-maritime-activity.aspx/> (검색일 : 2023.11.21.)